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2. 23 선고 2013가합10555 판결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나10539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2. 23 선고 2013가합10555 판결

전문

원고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신안군

변론종결 2014. 11. 25.

판결 선고 2014. 12.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신안월드(이하 '신안월드'라 한다)는 2005. 4. 21. 신안군 지역에 약 3조 3,755억 원 규모의 신안월드 관광신도시 사업 등 총 10개의 프로젝트가 포함된 압해권·북부권·흑산권·중부권 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투자사업'이라 한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안월드 프로젝트 투자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투자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부산저축은행과 신안월드 등(이하 '신안월드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투자사업 중 압해권·북부권 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한 용역 착수·보완·완성 등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협약 체결과 동시에 30억 원을 피고에게 예치하기로 약정하였고(이 사건 협약서 제9조), 이에 따라 신안월드는 2010. 8. 11. 피고에게 30억 원(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신안월드 등이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2. 1. 26.과 2012. 3. 27. 2회에 걸쳐 신안월드에 위 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함과 동시에 불이행할 경우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내용의 이행최고의 통지를 하였고, 2012. 10. 22. 신안월드에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몰취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부산저축은행은 2014. 8. 11. 현재 신안월드에 대하여 합계 33,603,176,261원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2. 8. 2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신안월드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신안월드는 전남 신안군 일대 수백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는 등으로 현재 무자력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그 피보전채권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신안월드는 2014. 8. 11. 현재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3개의 저축은행에 대하여 합계 65,782,634,895원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전남 신안군 압해읍 가룡리 116-3 전 704㎡를 포함하여 18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2014. 1.을 기준으로 한 위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합계 479,580,600원이며 위 부동산의 취득원가는 합계 2,112,656,06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신안월드가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신안월드가 소유한 부동산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4. 11. 25. 당시 신안월드의 대출원리금 채무와 신안월드 소유의 위 부동산의 시가도 위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4. 11. 25. 현재 신안월드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신안월드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하지 못한 송도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내 소매장 3개의 기부채납의무 불이행 이외에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압해권·북부권 투자사업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협약서 규정에 반하여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몰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신안월드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신안월드가 위에서 본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압해권·북부권 투자사업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고, 신안월드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일부 이행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적당히 감액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신안월드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금 중 감액된 차액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신안월드의 의무이행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투자사업 중 압해권·북부권 투자사업에 관한 이 사건 협약 규정

갑 제2호증의 기재(이 사건 협약서 제4, 5조)에 의하면, ① 신안월드 등은 압해권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② 이 사건 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용역사를 선정하여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제한 절차이행과 부지매수 등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과 문화재지표조사,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용역,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의한 특구사업시행자 지정과 특구지정 승인을 위해 필요한 환경성 검토 및 특구이용계획 등 각종 인허가 관련용역을 발주(용역착수)하고, ③ '신안월드 관광신도시' 건설사업 중 관광단지 조성부문과 관련하여 용역비 미지불 등으로 피고가 수령하지 못한 '테마파크 컨셉 디자인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미국엔터테인먼트디자인그룹)를 위 용역발주 전까지 확보하여 용역과정에 제시, 검토, 반영(용역보완)하며, ④ 위 각종 용역보고서를 피고와 공동감독 아래 관계법이 허용하는 최단기간 내에 완성, 각종 인허가 단계별로 적기에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가 부지매수 및 각종 인허가 업무대행에 착수(용역완성)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⑤ 신안월드 등은 북부권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⑥ 북부권 투자사업을 위해 이 사건 협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또는 민간투자법상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용역을 발주(사업착수)해야 하고, ⑦ 송도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등을 조성하면서 유통센터 내 소매장 3개와 함께 현재 신안수협이 사용하고 있는 낙후된 어판장을 친환경적이고 조형미 있는 건물로 신축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주민지원)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신안월드의 의무이행 내용

신안월드의 자회사인 유한회사 지도개발공사가 피고 소유인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570-15 외 5필지 지상에 어판장을 신축하여 2007. 12. 31. 피고와 사이에 이에 관한 증여계약을 작성하고, 2008. 1. 2. 이 법원 접수 제236호로 이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코환경컨설팅, 유한회사 천년건축사무소, 세기종합기술공사, 주식회사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① 신안월드는 2006. 9. 15. 주식회사 에코환경컨설팅과 북부권 투자사업 중 관광지 개발사업 용역과 관련하여 신안솔섬 온천원보호지구 사전환경성 검토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에코환경컨설팅은 2006. 10.경 위 초안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안월드에게 제출한 사실,

② 신안월드는 북부권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2005. 11. 21. 주식회사 세기종합기술공사와 신안솔섬지구 온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9. 22. 주식회사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와 송도지구 농수산물센터 프로젝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삼일회계법인과 지도읍 읍내리 위판장 및 농수산물 유통센터 사업성 평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3.경 유한회사 천년건축사무소와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회센터 설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투자사업의 경과

한편 갑 제12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8, 10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코환경컨설턴트, 주식회사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유한회사 천년건축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협약 협의 중이던 2003. 10. 27.경부터 2009. 8. 22.경까지 사이에 신안군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경작 목적 이외의 토지거래를 신안월드에 등에게만 허가하여 신안월드에 농지취득을 가능하도록 하고 세금을 감면해 주었던 사실, ② 피고는 압해권 투자사업의 완성을 위해 2008.경 압해대교를 개통하고 압해읍 송공지구 일원 도로를 확장하고 용역사업을 진행하였음에도, 신안월드는 이 사건 압해권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테마파크 컨셉디자인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인·허가 관련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보고서를 피고에게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는 북부권 투자사업의 완성을 위해 신안월드의 농지취득을 지원하거나 대행하여 주고, 레미콘 공장과 군 경비초소를 이전하도록 하는 등 여러 행정적 지원을 하였음에도, 신안월드는 북부권 투자사업 중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하지도 않았고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내 소매장 3개의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④ 에코환경컨설턴트는 2006. 11. 8. 신안월드로부터 신안솔섬 온천원보호지구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계약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초안보고서 작성 이후 용역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 ⑤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도 신안월드로부터 송도지구 농수산물센터 프로젝트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용역보고서 작성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초기에 중단한 사실, ⑥ 천년건축사무소는 2011. 4. 15.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회센터 설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건축주(신안월드 등)가 토지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허가가 반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안월드는 압해권 투자사업에 관하여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인허가 관련 용역을 발주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북부권 투자사업에 관하여 용역업체들과 사이에 일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용역완성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못하였으며, 또한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송도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내 소매장 3개의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임을 전제로 한 반환청구 부분 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채권자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인지 위약별인지는 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이 위약별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가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몰취하면서 계약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거나 그러한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점 등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0169, 60176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 10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03년경부터 신안군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를 하였다가 업체들이 중도에 사업 추진을 포기함으로써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투자사업이 중단될 경우 피고의 유·무형적 손해가 예상되어 신안월드에 그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협약서 제9조 제1호 단서는 신안월드가 이 사건 압해권·북부권 투자사업의 "착공"에 들어가기만 하면 피고는 예치받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즉시 신안월드에 등에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협약서 제9조 제2호는 신안월드가 이 사건 압해권·북부권 투자사업을 위한 용역 착수·보완·완성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 없이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협약서 제9조 제3호는 신안월드는 이 사건 협약서 제9조 제1, 2호에서 규정한 이 사건 이행보증금 약정과 별도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해

피고가 입게 되는 제반 기회비용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신안월드 등의 다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행보증금 약정의 의사는 신안월드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압해권·복부권 투자사업의 "착공"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협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어떠한 손해의 발생과 그 배상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이와 같이 이 사건 이행보증금 약정은 총 사업비 3조 3,755억 원의 이 사건 투자사업 중 일부 압해권·복부권 투자사업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사업 착수 이전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투자사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신안월드 등의 이 사건 협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행보증금은 신안월드 등과 피고가 손해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 그 배상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거나, 피고가 신안월드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의 이행에 나아가도록 압박을 가하고 위약하였을 때에는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으나,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이행보증금이 신안월드에 대한 의무 강제에 따라 피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하여 신안월드에게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로서 그 전부 내지 일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희호

판사류봉근

판사이미나